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공포안 검토보고

1. 기획예산과-12613(2015. 10. 1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5. 10. 15.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조례안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

나. 제안이유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
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
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
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사회복지사업,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2)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
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
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3)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(안 제7조)
- 4)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
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없음

붙임 1. 검토의견서 1부.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. 끝.

주무관 **이은석** 복지자원연계담당 **이용철** 복지정책과장 **민지선** 교육문화복지국장 ^{10/20} **代민지선**

협조자 법제담당 **박기훈** 기획예산과장 **권용대**

시행 복지정책과-24605 () 접수 (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2314 /전송 02-2241-6526 / les2140@sb.go.kr / 대시민공개